

설계자	확인자	설계년월일	2020.01. .
이영목	박현규		

필리핀 Batangas Gas-to-Power 사업
본 타당성조사

과업지시서

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

목 차

I. 과업지시서.....	3
1. 개 요.....	3
2. 과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150 일.....	3
3. 과업내용.....	4
1) 법률/제도 분석 및 전력공급계약 합의 초안 마련.....	4
2) 재무 분석.....	7
3) 기술 분석.....	9
4. 과업의 일반원칙.....	13
5. 과업수행 방법.....	16
6. 과업성과품 제출.....	17
7. 보안대책.....	18
II. 예정공정표.....	20

I. 과업지시서

1. 개 요

□ 과업명 : 필리핀 Batangas Gas-to-Power 사업 본 타당성조사

□ 과업목적

○ 필리핀 Batangas Gas-to-Power사업은 Lunzon섬 내 20만kl LNG터미널과 2.3GW 가스복합발전소를 건설/운영하는 사업임

- 대상부지는 50ha 면적으로써, 25년 장기 임대할 예정
- 사업주는 Off-taker인 Meralco社(필리핀 최대 배전사)와 20년 전력공급계약 (Power Supply Agreement, PSA) 체결 예정
- 또한, 사업주는 타 한국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LNG 연료조달 예정

○ 본 용역은 전력공급계약 기초협의를, 사업 수익성/리스크 진단, 그리드 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중심으로 사업타당성평가를 추진할 것이며, 용역 결과는 컨소시엄의 사업투자 의사결정에 주요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.

- Off-taker인 Merlaco社와 전력구매계약 협상 초안 검토 및 도출
- 환경영향평가, 그리드 영향평가 등 주요 인허가 추진
- 경제성 모델 구성, 사업위험도 분석,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수행

2. 과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150 일

3. 과업내용

1) 법률/제도 분석 및 전력공급계약 합의 초안 마련

(필리핀 PSA 계약 수행 실적이 있는 법무법인 참여 필)

□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 검토

- 필리핀 민자발전사업 투자를 위한 Legal Framework 검토
- 외국인 투자 제한사항 및 우대정책 (세제 및 금융상 혜택)
 - 대상부지가 위치할 경우 세금감면 등 투자 인센티브
- 외국인 투자 절차 및 담당기관
- 외국환 거래 관련 법률
- 외국인 토지사용권 취득 절차, 조건 등 검토
- 원주민 이주대책 검토

□ 사업구조 관련 검토

- 필리핀 법상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 검토
 - 현지 상법상 특기할 비일반적 규제사항(e.g. 이익적립강제 등)
- 외국인 투자기업 SPC 설립 형태, 절차, 운용, 청산 절차 검토 및 인허가 기관의 권한 및 역할
- SPC 설립 형태별 비교를 통한 최적 설립방안 제안
 - 현지 SPC설립 사례 및 현지/제3국/국내 설립 시 장단점 분석
- 최소자본금 규정, 고용제한, 법인소득세율(경제자유구역 포함) 등 비용

검토

- 제반 인허가 기관 및 해당 정부기관의 권한 및 역할 검토

□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법률 및 제도 검토

- 사업부지 확보 및 사용 관련 법률/규제/절차
 - 정부로부터 발전소 부지 임차할 경우 정부의 강제수용 등 행사 가능 여부 및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관련 강제규정 존재 여부
- 해외 사업자의 FSRU(Floating Storage & Regasification Unit) 또는 LNG터미널 건설/운영 사업과 관련된 법률/ 인허가 제도
- 민법, 상법, 노동법 등 필리핀 일반 법률 중 本 투자 관련사항 검토
 - 노동환경 등 국가 및 지자체 법적, 제도적 사항의 행정절차

□ 인허가 제도 검토

- LNG 터미널 및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 인허가 추진 절차 및 일정
- LNG 터미널사업 등록 및 LNG 수송 허가
- 환경영향평가, Grid 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(법률/인허가 제도 포함)
- 기타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 및 소요기간 검토
-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제반 법률/규제/절차 분석

□ 주요 계약 검토

- IPP 사업 선행사례 및 계약체결 위한 프로세스 조사
- 필리핀 에너지부와 배전회사의 CSP (Competitive Selection Process) 입찰 참여 절차 조사

- 필리핀 전력판매계약 검토(Tariff, 정부보증, Termination, 독소조항 등)

□ Off-taker 인 Meralco 社와의 전력공급계약 협상지원 및 초안 완료

- Meralco 社와 PSA 협상, 제안형 사업제안, CSP 프로세스 진행준비
- 신규 PSA 초안 및 주요 필요서류 제시
- 제안형 사업을 위한 주요 Rules & Terms 준비

□ IPP 사업의 금융조달가능성(Bankability) 및 투자자 수익률 확보 방안 검토

- EPIRA(Electric Power Industry Reform Act of 2001) 및 RCOA(Retail Competition and Open Access)가 IPP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미치는 영향 및 사례 분석
- CSP의 Fixed Price Bid로 인해 연료 가격 변동위험 및 환율변동위험이 구매자에게 Pass-through 가능 한지 여부 및 불가능할 경우 리스크 헷지 방안
- Meralco의 표준 PSA계약 검토
 - 現 계약구조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가능여부(e.g., Curtailment Clause)
 - 리스크 및 리스크 경감안 분석
- 최근 Gas to Power 또는 화력발전사업의 필리핀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례 분석
 - 중국정부자본(China Development Bank)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했던 사례분석(e.g. 660MW Mariveles, 3×135MW in Mindanao)
 - 이외 ECA(and/or) 상업은행 주도 프로젝트 파이낸싱했던 사례 분석

2) 재무 분석

(해외 IPP 사업 금융주선 실적보유 Agency 참여 필)

□ 재무모델 작성

- 사업의 주요 가정사항 및 현지 법인세, 부가세 등 모든 세제 반영된 초기 재무모델(Excel File) 구성
 - 국제회계기준 적용하여 해외 IPP 사업 분야에서 통용되는 형식으로 작성
- 투자자별 지분 비율, 금융조달 이자율, 물가상승율, 보험료, 환율, 감가상각 등 기본 가정 적정성 검토
- Tariff, 연료비 원가, 발전소 가동율, 전력판매량 등에 유연한 재무모델 구성
- 사업수지 및 기간별 현금흐름 추정

□ 재원조달계획 적정성 검토

- 공사비, 운영비 등 총사업비의 적정성 검토
 - 예비비, Escalation, DSRA 등 감안한 총 투자비 산정
- 자기자본 투입계획, 타인자본 조달계획, 부채 대 자본 비율, 예비재원 조달계획 검토
- 환율변동 및 환전 리스크 헷지 방안 검토 (USD Financing, PHP Financing, USD/PHP Mixed Financing)
- MDB, ECA 등 정책금융 조달 가능성 검토
- 필리핀 IPP 사업 Project Financing 사례 검토

□ 현지 세제 분석

- 필리핀 현지 법인세, 부가세 등 주요 세제 파악
- Project SPC 설립 관련(인프라 투자) 세무 및 세제 혜택, 부담금 검토
- 건설 / 운영 단계별 관련 세무 검토
- 외국인 투자사업 시 Tax Incentive 제도
- 외국환 거래 관련 절차 및 제한 검토
- Tax Loss 최소화 투자구조 검토
- 국/내외 과소자본세제, 외환, 차입규제 등 제약조건이 고려된 홀딩 컴퍼니 등 최적 투자구조 제시

□ 사업보험

- 건설공사보험, 운영보험, 테러리즘, 지진 등 필수보험, 선택보험 구분하여 제시

□ 경제성 분석

- 재무모델 수립을 통한 Cash Flow, DSCR, NPV, IRR, Payback Period 등 경제성 분석
- 수익성지표(NPV, ROE, ROI, 회수기간 등) 및 안정성 지표 분석(DSCR, 현금과부족 발생여부 등)
- SPC 추정 재무제표 작성

□ 사업위험도 분석

- 투자회수 전략수립 시 환율변동, 이자율변동에 따른 헷지방안 검토
- 태환(환전) 리스크 헷지 방안 검토
- Termination 時 지급금 등 사업주 위험 대응방안 검토

○ Risk Management Plan 수립 (국가, 재무, 사업, 건설 등)

□ 시나리오 및 민감도 분석

○ Tariff, 공사비, 운영비, 대출이자율 변동 등 민감도 분석

○ LNG 가격, 이용률 등 주요 Risk에 따른 민감도 분석

○ 재원 조달구조 변경, 대출 상환방식 변경 등 시나리오 분석

- 자금조달 시나리오분석(재원주달 구조, 재원별: 외국자본, 국내자본 등)

□ 기 타

○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PIM(Project Information Memorandum) 작성

○ 이외 ECA (and/or) 상업은행 주도 프로젝트 파이낸싱 했던 필리핀 사례 분석

3) 기술 분석

□ 사업 개요 및 목적

○ 개요, 위치, 과업범위, 진행현황 및 일정

□ 사업환경 및 시장조사

○ 지역 일반현황, 행정구역, 지목별 용도별 토지 이용

○ 과거 5년이상 기상현황 검토

- 기온, 강우, 강설, 풍향, 풍속, 일사, 홍수, 지진 등

○ 전력시장 변화 및 향후 계획 분석

○ 발전소 현장 입지 조사

- 지형, 지질, 지진, 위치, 표고, 홍수위, 구획, 사진, 과거 매립지여부, 리스크 등

○ 접근로 및 운송방안

- 진입도로, 무역, 교통, 항구 하역물량 및 기자재 운송방안

★ 연료시장 분석 : 가격변동 예측, 최적 수급방안

- LNG 수급 동향 및 향후 최적 수급방안 검토 : Gas Pipe Line, FSRU, LNG 터미널 등
- LNG 수급 방안 중 최적 기술 선정 및 예상조달가격 분석

□ 환경영향평가

(필리핀 내 현지 환경영향평가 참여업체 필)

○ 환경영향평가 (Environmental Impact Study, EIA) 착수 및 기초조사

- 환경법규 규제 동향 : 환경영향평가 시행 목적 및 관련 인허가
- 환경영향 평가 절차수립 : 일반절차, 사업특성에 따른 EIA 수행 유무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등급 결정, 환경영향평가 범위 설정
- 사전예정지역 현황조사 : 지리적, 생태적, 사회적 환경 분석

○ 환경영향평가 시행

- 사업지구 위치 및 면적, 총사업비, 사업기간, 사업의 목적
- 사업수행단계 및 단계별 구성요소
- 사업수행 시 소요자원 및 소요인력

- 사업 시 주요 Activities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(추정)
- 사업수행으로 인해 환경상 악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기술(토양오염, 수질오염, 대기오염, 인근주민에 의한 민원 등)
- 건설, 시운전 및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상 주요 악영향 기술

○ 환경관리계획

- 환경영향 저감 대책 (건설 시, 운영 시)
- 주민 홍보 및 교육
- 모니터링 계획

○ Environmental Impact Study 보고서 제출

□ Grid Impact Study/Facility Study

○ 송, 수전 설비 설계 및 용량 확정

- 전력계통 현황 및 건설계획 조사
- 최적의 발전설비용량 제시
- 송, 수전 검토 설계

○ 계통안정도 검토

- 신규 복합발전소 송전량 예측 및 계통안정도 검토
- 기존 또는 신설 변전소 위치 및 연계 시 예상문제점 검토
- 공사용 동력 인출 변전소 및 인입선로 구성

○ Grid Impact Study/Facility Study 보고서 제출

□ LNG 터미널 및 발전소 개념설계

○ 최적 LNG 터미널(육상터미널, FSRU 포함) 및 발전설비 검토

- 발전, 제어, 전기, 설비 형식 및 설비 배치 방안 검토
- 운전특성을 고려한 계통구성 검토
- 기기 제작사 별 기술 및 가격 동향 검토
- 가스터빈 및 증기터빈 사이클 열성능 예측
- 배열회수보일러의 효율 및 열회수량 예측
- 복합사이클 출력 및 열소비율
- LTSA (Long Term Service Agreement) 및 O&M 추정 금액 산출
- EPC 추정금액 산출

○ 주요설비 개념설계

- 가스터빈 발전기 및 증기터빈 발전기
- 배열회수보일러
- 복수 및 급수, 원수 및 보충수 계통
- 냉각수, 압축공기, 보조증기 및 연료공급 계통
- 전기설비 및 제어설비
- 연료공급 및 냉각수 공급을 위한 해양조사
- 용수공급 및 폐수처리방안 수립

- LNG 인프라(펌프, 압축기, Shell & Tube 열교환기 등)

□ 사업 수행 계획

- 조직구성 계획
- 사업추진 공정계획 수립 및 공정표 작성
- 운영 기간 및 유지보수 기간 검토
- 주기기 및 시공을 위한 EPC사 단순 입찰 추진방안 검토(LNG 터미널 및 가스복합발전 포함)
- 영문 중간/최종 보고서 제출
- CAD 파일, Excel 파일 등 원본 전자자료 제출

4. 과업의 일반원칙

□ 자료활용

- 시장조사와 관계문헌은 국내 기존자료는 물론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, 통계 등을 반영할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
-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,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,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함

□ 과업수행원칙

- 최종낙찰자(이하 ‘과업수행자’)는 과업수행 상의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
- 본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

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

- 본 과업의 수행상 시장조사, 법률, 기술, 수요 등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 위탁범위 및 내용, 위탁금액, 위탁의 필요성,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함
- 외부업무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/기술적 제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(계약상대자, 외부전문기관 포함)가 부담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수행연구자별 세부 업무범위 등을 정하여 우리 공사와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하여야 함

□ 과업의 변경

-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,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, 과업 내용의 추가 등으로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
-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
- 기타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당사자가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

□ 일반조건

- 과업진행에 대하여 우리 공사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책임자와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공사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
- 각 부문별 과업 항목은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함

-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임의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제반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
- 과업수행 상 경비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, 사용내역에 대한 집행근거(영수증 등)는 준공 시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서는 사후에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
-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우리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함

□ 특별조건

-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,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우리 공사가 소유함
 - ※ 우리 공사는 과업수행자의 동의 없이 성과품을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음
- 사전승인을 득한 연구인력으로 과업을 수행하며, 변경할 경우, 기존 인력보다 업무수행역량이 높은 자로 한정하며,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

□ 성과물 작성

- 사용되는 용어는 국문 및 영문으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, 전문용어는 () 안에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며, 교육부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함
- 작성된 최종보고서 원안은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, 그 결과 성과품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우리 공사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계약기간 내에

인쇄/납품해야 함

- 성과품에 대한 작성방법, 양식, 활자크기, 지질 및 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/결정해야 함
- 공정보고, 현지조사, 착수보고, 중간보고, 최종보고 등 과업수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보고 및 관련자료는 서면과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함

□ 기 타

- 과업수행자는 우리 공사가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함
- 용역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,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음

5. 과업수행 방법

□ 전문가 자문

- 본 과업내용 관련 기관의 실무책임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중간보고서 제출 전, 최종보고서 제출 전 등 2회 이상 자문계획(자문회의, 토론회, 워크숍 등)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실시하여야 함

□ 현지조사

- 사업대상국의 인문, 자연, 경제, 법률 및 사업환경 조사 등 내실 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사업대상국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함

- 과업수행자는 조사지역 및 일정, 조사자(과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, 위탁 외부전문기관 포함) 등 해외조사계획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실시함
- 과업수행자는 해외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조사 관련 활동 내역 등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

□ 공정보고 및 추진현황 회의

- 매월 말 기준으로 과업의 추진상황을 작성하여 용역진도보고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함

6. 과업성과품 제출

□ 착수보고

-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,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
 - 착수보고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주요내용을 확인하고,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, 과업참여자 명단, 과업수행조직의 편성 및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

□ 중간보고

- 중간보고는 감독관과 보고일정을 협의하고 보고서 5부를 제출하여야 하며, 동 보고서에는 착수보고 시 확인한 주요내용에 대한 과업수행방법을 구체화하고, 검토한 내용의 잠정결론 및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함
 -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중간보고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

□ 최종보고

- 최종보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결정하고 조사연구한 최종 내용을 보고해야 함. 단, 최종보고에서 제안된 수정 내용을 감안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야 함
- 최종보고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성과물작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30부를 제출하여야 함. 또한 최종보고서, 기타 참고자료 및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 -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최종보고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

□ 수정보고서

-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후 5개월 이내에 추정수입 및 운영비 추정 등에 사용된 기초자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 변경사항을 반영한 수정보고서를 우리 공사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 10부를 제출하여야 하고, 이 때 수정보고서, 수정 참고자료, 수정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
7. 보안대책

- 과업책임자는 국토교통부보안업무시행세칙 제54조(용역업체에 대한 보안대책)를 준수하여야 하며,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동 세칙에 의한 보안각서(별첨)를 제출받아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, 분실,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,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,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, 대외비와 일반자료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

-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,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
-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규정 이행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
- 최종보고서 등 성과물(확정안 포함)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생산관리하여야 함
-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
-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,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(업체명, 인가근거, 참여자, 발간일자) 및 원지, 폐지,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함
-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, 정규직원에게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
-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때는 필요한 최소부분만 생산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,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보안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함
-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,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/시행하여야 함

○ 성과품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

II. 예정공정표

항목		1개월	2개월	3개월	4개월	5개월	
1. 법률/제도 분석		■	■				
2. 사업환경 및 시장조사		■	■				
3. 재무모델 작성		■	■	■			
4. 시나리오 및 민감도 분석				■	■	■	
5. LNG터미널 및 발전소 개념설계		■	■	■	■		
6. 전력공급계약 합의 초안			■	■	■	■	
7.그리드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			■	■	■	■	
보고회		착수 보고		중간 보고		최종 보고	
과업 진도율	당기	15	25	20	20	20	
	누적	15	40	60	80	100	

